

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8. 7. 1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의 번	안 호	491
--------	--------	-----

1. 제안사유

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,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가.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대의 지정주체 지정(안 제2조)

나. 청소년출입제한 대상구역 지정(안 제3조)

다.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의 지정(안 제4조)

라.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대의 지정절차 명시(안 제5조)

마.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운영방법 명시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 : 청소년보호법(제5조, 제25조)

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표준안
<도아동82600-10272('97.10.15)>

4. 입법예고 :

가. 기간 : '98. 6. 15 ~ 7. 4

나. 장소 : 고성군공보, 군계시판

5. 제정조례안 : 붙임

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5조 및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,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지정주체)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군수가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.

제 3 조(출입제한구역)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.

1.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
2. 청소년유해매체물,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
3.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
4.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

제 4 조(출입제한시간)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제 5 조(지정절차) ①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,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,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②군수는 고성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출입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선도대책) ①군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진입도로, 구역내 벽면 등 적정장소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지정시간 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